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6
----------	--------

제출일자	2003. 2.
제 출 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보완(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한정함
 - 자동차세 추징 단서규정 삭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6조)
 - 유료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무료 또는 저렴한 실비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함.
-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 내지 제17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세분화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
- 수도권내 공장·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안 제25조제1항)
 - 감면시한 : 2002년12월31일 ⇒ 2005년12월31(3년)

■ 개정근거

- 경상남도 세정13400-11523호 (2002.12.06)
- 경상남도 세정13400-10018호 (2003. 1.04)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중 “본인을 위하여”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로 하고, 동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u></p> <p>1. ~ 2. (생략)</p>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u>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u>2002년12월31일까지</u>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u></p> <p>1. ~ 2. (생략) ② (생략)</p>	<p>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u>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u>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p> <p style="text-align: center;">-----2005년12월31일-----</p> <p>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